

## 2.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시행규칙

제정	1972. 3.28	문교부령	제293호
제 1차개정	1972.11.10	문교부령	제306호
제 2차개정	1973.11.17	문교부령	제329호
제 4차개정	1975. 5.31	문교부령	제361호
제 5차개정	1979. 2.12	문교부령	제439호
제 6차개정	1980. 4.18	문교부령	제464호
제 7차개정	1981. 2.20	문교부령	제487호
제 8차개정	1982. 2.27	문교부령	제501호
제 9차개정	1983. 3.31	문교부령	제513호
제10차개정	1984. 3. 7	문교부령	제524호
제11차개정	1992. 6.12	교육부령	제617호

제 1 조(목적) 이 규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협력학교의 지정) 영 제13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(이하 “방송대학”이라 한다)의 협력학교를 지역별로 별표와 같이 정한다.

제 3 조(협력학교의 임무) 협력학교는 방송대학생의 출석수업과 학기말 시험을 실시하며, 이에 부수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.

1. 출석수업 기간중의 강의·실험·실습 및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
2. 학급편성, 시간표 작성 및 강사진 확보
3. 방송대학의 학칙에 의한 시험실시와 성적평가
4. 기타 방송통신교육에 관하여 방송대학장이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

제 4 조(출석수업의 시기 및 시간수) 협력학교가 실시하는 방송대학 학생에 대한 출석수업의 시기 및 시간수는 방송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.

제 5 조(수업준비) ①방송대학장은 협력학교별 출석수업자 명단, 출석 수업시간 배당기준 및 기타 출석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개강 60 일전에 각 협력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협력학교의 장은 제 1 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방송대학 학생에 대한 출석수업 시행계획을 작성하고, 이를 교육실시 30일전에 방송대학장에게 통보하여 상호 협의한 후 출석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6 조(결과통보) 협력학교의 장은 방송대학 학생에 대한 출석수업의 실시결과를 그 수업종료후 2주일 이내에 방송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7 조(운영지원) 방송대학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력학교의 방송대학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제 8 조(학생징계) ①협력학교의 장은 방송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.

②협력학교의 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한 때에는 그 결과를 방송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9 조(시행세칙) 방송통신교육에 관하여 이 규칙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방송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.

부 칙(1972. 3.28 문교부령 제293호)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72.11.10 문교부령 제306호)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73.11.17 문교부령 제329호)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75. 1.22 문교부령 제353호)

이 영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75. 5.31 문교부령 제361호)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79. 2.12 문교부령 제439호)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80. 4.18 문교부령 제464호)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81. 2.20 문교부령 제487호)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82. 2.27 문교부령 제501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83. 3.31 문교부령 제513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84. 3. 7 문교부령 제524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2. 6.12 교육부령 제617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별표)

지역별 협력 학교

지역별	협력 학교
서울특별시	서울대학교·고려대학교·국민대학교·성균관대학교·서울교육대학
부산직할시 및 경상남도	부산대학교·경상대학교·동아대학교·창원대학교·부산교육대학·진주교육대학
대구직할시 및 경상북도	경북대학교·안동대학교·대구교육대학
인천직할시 및 경기도	서울시립대학교·동국대학교·인하대학교·인천교육대학
광주직할시 및 전라남도	전남대학교·목포대학교·순천대학교·광주교육대학
대전직할시 및 충청남도	충남대학교·공주교육대학
강원도	강원대학교·강릉대학교·춘천교육대학
충청북도	충북대학교·청주대학교
전라북도	전북대학교·전주교육대학
제주도	제주대학교